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2560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8. 접수 제939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2020. 8. 19.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21. 8. 18.(그 뒤 2023. 8. 17.까지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2022. 9. 27.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후 2022. 10. 25. 폐업하였다.

원고는 2022. 11. 2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에 86,188,9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2. 6.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8. 접수 제93959호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2022. 9. 27. C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2. 11. 28.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나 물상담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특정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 초과 상태의 B이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은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주소] 서울 동대문구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78.54㎡

2층 내지 11층 각 429.71㎡

12층 내지 14층 각 339.05㎡

15층, 16층 각 215.6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동대문구 F 대 1193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1933.7분의 55.13 끝.

